의안번호	2205758
의 뢰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4.11.26.
추계번호	24D528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	의무규정
2	안 부칙 제2조(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	의무규정
3	안 부칙 제3조(소멸시효 특례의 소급적용)	이 법 시행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부칙 제2조(공소시효 특례의 적용례)	
3	안 부칙 제3조(소멸시효 특례의 소급적용)	

2. 상세 사유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안 제4조,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 제정안에 따라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국가배상사건 중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지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금,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금(이하 “패소 부담금”이라 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제기되지 못하는 국가배상청구 건수, 소송 가액, 승소 및 패소 가능성, 패소 부담금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배상금(법원 판결금 및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 부담금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아래와 같음

[표] 국가배상금 등 지급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백만원)

	법원 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 부담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267	146,600	99	169	414	7,868	780	154,637
2020	258	62,530	94	210	411	10,041	763	72,781
2021	275	215,908	60	83	430	7,751	765	223,742
2022	293	140,810	57	87	532	7,471	882	148,368
2023	414	128,932	75	170	411	7,951	900	137,053

자료: 법무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